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증장기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I클래스 가입자 격 확대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3. (생략) 4. I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5. ~ 6. (생략) ④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3. (현행과 같음) 4. I클래스 수익증권 : <u>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</u>,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5. ~ 6. 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(생략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</u>

		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(생략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(생략)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생략)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	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 략) ②(생 략)	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38조(보수) ①(생 략)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 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 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 략) ③(생 략)	제38조(보수) ①(현행과 같음)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 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 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-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9월</u> <u>1일부터 시행한다.</u>